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5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총선 이후 폐현수막이 급격히 늘었지만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행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을 발표하는 등 정부부처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 시도 자치구가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은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제6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